

부산광역시 사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8. 02. 14 ----- 사하구
청장

나. 회 부 일 자 : 2008. 02. 15

다. 상 정 일 자 : 2008. 02. 19 (제154회 사하구의회 임시회
제1차 도시위원회 상정, 원안의결)

2. 제안설명 요지(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)

가. 제안사유

「건강가정기본법」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함(안 제2조제1항).
- 지역주민 대상 가정문제 예방·상담 및 치료, 건강가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, 가정생활 문화운동 전개,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, 가족서비스 욕구조사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(안 제3조).
-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, 예산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비상근 또는 겸직이 가능하며,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야 하며, 최소 4명 이상으로 한다.(안 제5조).
- 구청장은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민간기관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음(안 제9조제1항)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건강가정기본법」 제35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등
- 나. 예산조치 : 구비 부담(15%) 41,000천원 2008년도 본예산 편성
- 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- 라. 입법예고 : 2008. 1. 24 ~ 2. 13(20일간) ▷ 제출된 의견 없음
- 마. 기 타 : 2008년도 건강가정지원센터 세부운영지침

4. 전문위원 검토의견

본 조례 제정 건은

- 사회공동체의 기본 핵인 가정의 안정과 행복에 대한 가치추구와 건강하고 생산적인 가정을 유지·발전시키고 사회통합 기능증대와 행정의 안정성, 효율성 확보를 통한 안전망구축과 건강한 가정문화 창달에 크게 기여한다고 생각되며
-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안녕과 행복을 지향하는 헌법정신에 부합되고 웰빙시대에 걸맞는 시의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되며
- 특히, 서울특별시와 송파구, 강북구를 비롯하여 대구광역시 의 달서구, 중구, 경기도 일원의 남양주, 파주시, 부산광역시의 부산진구, 해운대구 등 전국의 18개 시·군·구에서 기해 조례를 제정 시행중에 있고 여타 시·군·구에서도 준비 중에 있으며
- 또한 건강가정지원법 등 관련법령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있는 점을 감안 한다면

위 조례 제정 건은 적법타당하다고 사료됨

- 다만,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 제2항에 『구청장이 제출하는 의안은 회의개시 7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.』라고 명문화 되어있음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환기시켜드립니다

- 따라서 해당 부서장은 본 규정을 숙지하여 금후에는 의안 지연 제출 등 여사한 사례가 재발치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5. 질의답변요지 : 생 략

6. 토 론 요 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의결